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김상훈
유용원 · 구자근 · 김기웅
김선교 · 강대식 · 김용태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.

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29조의2 신설).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벌칙) 제16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0조제3항제5호 중 “제23조에”를 “제8조, 제13조제2항, 제15조,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”로, “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”를 “이행하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30조(벌칙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</p>	<p><u>제29조의2(벌칙) 제16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 <p>제30조(벌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8조, 제13조제2항, 제15조,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-----이행하지-----</u></p>